

2025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 공고

(재)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세종 지역특화소재 활용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「2025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」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지역 내 유망한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3월 26일

(재)세종테크노파크원장

1 사업개요 및 절차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
 -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~ 2025. 11. 20.
 - 사업목적
 - 지역특화소재* 및 전략적육성분야**를 활용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지원
 - * 지역특화소재 : 지역의 전통, 역사, 문화, 인물·산업 등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
 - ** 전략적 육성 분야 : 한글 융복합 콘텐츠/서비스, 스마트시티 주요서비스 융복합 콘텐츠/서비스 (데이터·플랫폼, 교통, 에너지, 헬스케어, 생활안전, 실감미디어)
 - 세종만의 차별화된 지역특화 소재(지역산업·문화·관광자원 등) 및 전략적 육성분야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산업 활성화 도모
- 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인 콘텐츠 기업
 - 지원규모 : 3개 과제 이내 / 과제당 1.4억원 이내
 - 지원조건 : 민간 자부담(총사업비의 10% 이상, 현금) 별도 편성 필수

□ 추진절차

| 구분 | 추진일정 | 내용 |
|-------------|--|---|
| 지원사업 공고 | 3/26~4/11 | ○ 지원사업 사업공고(홈페이지 등) ※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※ 수요조사 참여 기업 대상 SMS 안내 예정 |
| ↓ | | |
|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| 3/27~4/11 | ○ 사업 신청서 접수 (4/11 16시 마감) ※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|
| ↓ | | |
| 적정성 검토 | 4/14 | ○ 제출서류 확인 및 적정성 검토 ○ 지원자격 적격 여부 및 지원제외대상 여부 확인 |
| ↓ | | |
| 선정평가 | 4/21~22 (예정) *추후 일정 확정 안내 예정 | ○ 외부심사위원(서류검토 기반 발표평가) ○ 종합심의를 통한 과제에 대상 선정 및 사업비 심의·조정 (심의 의견, 지원사업비 예산 상황에 따라 최종 지원사업 비는 조정하여 통보) ○ 제출서류 기반 과제 수행 능력 및 종합평가 시행 - 제출과제 발표평가 및 지원비 심의, 과제선정 - 제안발표 및 질의·응답에 따른 과제 수행 능력 평가 (기획력, 사업성, 수행능력 등 종합적 평가 시행) - 선정과제 평가 의견 및 사업비 조정 심의결과 통보 |
| ↓ | | |
|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| 4/25~4/30 | ○ 예산 변경내용 및 수정사항 반영 최종사업계획서 접수 (평가의견 및 예산 조정 내용 사업계획서 반영) ○ (현장방문)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확인 |
| ↓ | | |
| 협약 체결 | 5월 초 | ○ 세종테크노파크-선정기업 간 협약 체결 - 수정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제출 후 협약체결 ○ 1차 지원금 지급 |
| ↓ | | |
| 사업중간평가 | 8월 ~ 9월 초 | ○ 사업 추진 실적 중간 점검 추진 ○ 사업 수행에 따른 중간평가 ○ (필요 시) 사업체 현장 점검 진행 |
| ↓ | | |
| 사업 성과물 점검 | 11월 말 | ○ 사업 최종평가 진행 |
| ↓ | | |
| 사업비 정산 | 12월 | ○ 사업비 정산 보고 |

※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

2 지원개요

□ 지원내용

- 지원장르
 - 융복합 실감콘텐츠(XR 등), 만화·웹툰, 캐릭터, 애니메이션 방송영상, 콘텐츠 솔루션, 지식정보 등 콘텐츠 분야 전 분야 장르 제한 없음
- 공모분야 : 3개 이내
 - 지역 특화소재(전통, 역사, 문화, 인물, 산업 등 고유 특성)를 활용한 콘텐츠
 -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주요 산업과 연계한 콘텐츠
 - 타 지역 대비 지역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·외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 콘텐츠 개발

| 분야 | 개요 | 지원규모 | 지원수 | 비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
| 자유 과제 | - 지역특화 소재 콘텐츠 - 지역 전략적 육성 분야 콘텐츠 | 과제당 140 백만원 이내 | 3개 과제 이내 | - '한글' 관련 콘텐츠 1개 이상 선정 - 사업비는 선정평가 시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|

※ 지역 전략적 육성 분야

① 한글 융복합 콘텐츠/서비스

② 스마트시티 주요서비스 융복합 콘텐츠/서비스(데이터·플랫폼 교통, 에너지, 헬스케어, 생활안전, 실감미디어)

□ 지원자격 및 자격제한 사항

- 신청자격 : 아래의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 - 부동산업 지원불가, 비영리기업 지원불가
 - 타 지역, 동 사업 중복 지원 불가 (중복 지원 시 협약 포기)
 - 협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과제기간 (2025.11.20.)내 사업완료 가능한 기업만 지원

| 구분 | 지원자격 |
|-------|--|
| 주관 기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콘텐츠 분야 영리 기업(본사 또는 지사 법인사업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세종에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자등록 완료 (사업자등록일 기준) -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관외기업과의 컨소시엄 참여 가능(참여기업에 한함) - 컨소시엄으로 지원 시 주관기업은 반드시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이어야 함 - 콘텐츠기업 :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(정의)에 해당하는 산업 중 “만화(웹툰), 애니메이션, 캐릭터, 방송영상, 게임, 음악, 콘텐츠솔루션, 지식정보, 뉴콘텐츠 등”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 ※ 주관기업,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에서 제재사유 발생시 사업 지원 불가 ※ 예산편성시 주관기업의 비중이 최소 51% 이상이어야 함 |
| 참여 기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소재지 상관없이 가능 (관외기업(서울포함) 및 지역 기업 컨소시엄 가능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참여기업으로 대기업 지원 가능 (단,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, 대기업 자부담 총사업비 20% 이상, 유통판로 확보서 의무 제출) |

- 신청자격제한 :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과제신청 제외
 -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, 향후 관련 사업 일체 제재조치

| 구분 | 지원자격 제한사항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기본 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고일 시작일 기준 세종시에 본사 또는 지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체 (종사자가 대표자 포함 3인 이상 필수/고용인력 : 공고일 기준 등록된 자) ■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, 4대 보험료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■ 신청일 이전에 제작 완료하거나 출시 또는 상용화된 콘텐츠의 경우 ■ 지원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영리단체는 지원 불가(주관기업/참여기업 모두 지원 불가) - 컨소시엄 중 한 개 기업이라도 지원 제외 대상일 경우 지원 불가 ■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 혹은 타 업체 콘텐츠 위탁생산(OEM) 형태의 과제 |
| 참여 제한 및 배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청일 현재 동일 한 과제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 (재)세종테크노파크 및 타기관 지원사업, 한국 콘텐츠진흥원 등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(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과제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현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은 반납해야 함) ■ 신청일 현재 콘텐츠기업(주관 또는 참여)이 동 지원사업 및 타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(연구개발사업 제외)인 경우 (단,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, 5,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) ■ 신청일 현재 (재)세종테크노파크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(연구개발사업 포함) 누적 금액과 신규신청금액(연구개발사업 포함)의 합계액이 25억원 초과인 경우 ■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있거나,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■ 신청일 현재 콘텐츠기업이 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보조금의 정산반납 대상액(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) 및 기술료를 체납(매출조사 거부, 회피 등 포함), 관리비 등 채무가 있는 기업 및 개인 ■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참여기관, 대표자 및 책임자,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수령자 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참여기관, 대표자 및 책임자 ■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(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) 및 기술료를 체납(매출조사 거부, 회피 등 포함)하고 있는 경우 ■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의 경우 |
| 기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 또는 참여), 과제참여인력, 대표권자,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(단,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관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) |
| 증명 | ※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함 |

□ 지원조건 및 의무이행사항

○ 지원조건

| 구분 | 내 용 |
|-------|---|
| 일반 조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협약 종료일까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콘텐츠 완성 (사업기간 내 유통 또는 서비스 개시되어야 함) |
| 인력 채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규인력 채용 의무 : 과제당 2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(정규직 또는 계약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안신청서와 달리 신규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그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- 신규인력 인정기준은 해당 과제 참여율 100%의 참여자에 한함 - 신규인력은 인정 기간 이내 채용,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원칙(퇴사 시 대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고용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지, 인력 채용 권고 - (과제당) 2명 이상 신규채용 필수(정규직 또는 계약직) - 채용 기준 :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유지, 퇴사 시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함 (중간최종 평가 시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인력에 대해서만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인정) - 타 단순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 중인 인력의 인건비 중복 계상 불가 (비고 칸에 인건비 수혜사업명 작성 필수) - 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, 법정 근로시간 준수 적용 |
| 예산 편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총 사업비(지원금+기업자부담금)의 10% 이상 기업자부담금(현금) 매칭 필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비는 평가 시 신청액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 - 기업부담금(자부담)의 경우 현물 불인정 - 대표자 인건비는 참여율 최대 50% - 세부예산편성은 관리지침에 준하여 반영 필수 |
| 보험 증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각각 이행보증보험증권 분리하여 발급 - 선정 후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제출기간 내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- 보험기간 : 협약기간 + 협약종료일로부터 60일 |
| 기술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술료 미징수 |
| 권장 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당해연도(~2025. 12월 말) 콘텐츠 사업화 계약체결 1건 이상 ■ 지식재산권(특허, 상표, 저작권, 영업비밀) 등록 권장 |

○ 의무이행사항

| 구분 | 세부내용 | 비고 |
|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교육 수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필수 이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명확한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해 참여인력 중 이체담당자를 포함하여 1인 이상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육을 반드시 수료 | 1인 이상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이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참여인력 전원 성평등 교육(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)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※ 성희롱 예방교육 인정범위 :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,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,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| 참여인력 전원 |
| 성과 관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협약 완료 후 차기 연도부터 3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, 매출액·고용창출 등 실적조사 협조 의무 ■ 지원과제에 대한 요청자료 제출 필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수행 관련 자료, 사후 결과조사, 정보공시 등 (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) ※ 수행기업은 지원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술이전, 특허출원·등록 등 성과나 활용실적을 진흥원에 보고 | 요청 시 (사업종료후 3개월 필수) |

□ 사업비 자부담 및 지급 기준

○ 사업비 자부담 기준

- 기업(민간)자부담 : 총사업비의 10% 이상
- 총 사업비(100%) 구성 : 정부지원금(90%이하) + 신청기업 자부담금(10%이상)
예) 총사업비 100백만원 = 지원금(국고+지방비) 90백만원(90%) + 민간자부담 10백만원(10%)
- 단, 대기업 참여시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, 민간자부담 총사업비(국고+지방비+민간자부담)의 20%이상 편성(현금) 및 유통판로 확보서 제출 필수

○ 지원금 지급 : 협약체결 후 2회 분할지급

- 1차 지원금 신청 시 기업(민간)자부담금 입금 증빙 제출
- 총 사업비 중 기업자부담금 선집행 필수,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만 사업비 집행액으로 인정
 - ※ 중간평가 결과 '중단'으로 판정될 경우 잔금 지급 불가 및 협약 파기, 수행 내용에 따른 지원금 잔액 또는 기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
 - ※ 최종평가 결과 '미흡'으로 판정될 경우 지원금 잔액 또는 기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및 사업 참여 제한
- 사업비 지원 요건
 - 지원금은 제안되는 콘텐츠 제작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
 - ※ 경상운영비 성격의 금액 집행 불가
 - 사업비 사용에 있어 관세,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,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됨

| 구 분 | 내 용 |
|--------|--|
| 1차 지원금 |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총 지원금의 70% 지급 |
| 2차 지원금 | 중간평가 결과, '계속' 판정을 받았을 경우 잔여 지원금 30% 지급 |

○ 지원금 및 자부담금 사용관리

-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금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함(지원금 및 자부담금 통합 계좌 1식)
- 상기 계좌와 연동된 전용 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함
- 자부담금은 해당 통장에 입금, 확인 후 지원금 지급
- 총사업비(지원금+자부담금)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

3 선정절차 및 기준

□ 선정절차

| 구분 | 추진일정 | 내용 |
|-------------|--|--|
| 지원사업 공고 | 3/26~4/1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사업 사업공고(홈페이지 등) ※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※ 수요조사 참여 기업 대상 SMS 안내 예정 |
| ↓ | | |
|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| 3/27~4/1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신청서 접수 (4/11 16시 마감) ※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|
| ↓ | | |
| 적정성 검토 | 4/14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출서류 확인 및 적정성 검토 ○ 지원자격 적격 여부 및 지원제외대상 여부 확인 |
| ↓ | | |
| 선정평가 | 4/21~22 (예정) *추후 일정 확정 안내 예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부심사위원(서류검토 기반 발표평가) ○ 종합심의를 통한 과제에 대상 선정 및 사업비 심의·조정 (심의 의견, 지원사업비 예산 상황에 따라 최종 지원사업 비는 조정하여 통보) ○ 제출서류 기반 과제 수행 능력 및 종합평가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출과제 발표평가 및 지원비 심의, 과제선정 - 제안발표 및 질의·응답에 따른 과제 수행 능력 평가 (기획력, 사업성, 수행능력 등 종합적 평가 시행) - 선정과제 평가 의견 및 사업비 조정 심의결과 통보 * 지원금액은 평가결과 및 의견에 따라 조정되어 통보될수 있음 |
| ↓ | | |
|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| 4/25~4/3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산 변경내용 및 수정사항 반영 최종사업계획서 접수 (평가의견 및 예산 조정 내용 사업계획서 반영) ○ (현장방문)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확인 |
| ↓ | | |
| 협약 체결 | 5월 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종테크노파크-선정기업 간 협약 체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정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제출 후 협약체결 ○ 1차 지원금 지급 |

※ 평가 일정은 심사장소 및 평가위원 섭외 등에 의해 변동 가능

□ 선정방법 및 기준

- 적정성 검토 : 제출서류 확인 및 지원요건 부합 · 지원제외대상 여부 확인

| 구분 | 심사기준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적정성 검토 | ○ 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장 소재지 | ○ 부적합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음 |
| | ○ 공고기준 필수 서류 제출 유무 | |
| | ○ 공고기준 신청자격제한 대상 유무 | |

- 선정평가 : 과제신청시 제출한 서류검토, 발표자료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 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가능여부 등 종합적 평가
 - 서류검토 기반 발표평가 : 제출서류 기반 과제 수행 능력 및 지원금 등 종합평가
 - 평가위원 : 산업계, 학계,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
 - 평가기준 : 종합심의 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지원과제 중에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
 - 사업비 조정 등 종합심의 절차를 통해 발표평가 기준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(과제선정여부, 과제별 지원금 확정 등)

※ 협약 전 선정과제 중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, 70점 이상 과제 중 점수순으로 후순위 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

- 평가항목

| 평가항목 | 세부지표 | 내용 | 배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|---|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|-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수행 기관 (25점) | ○ 추진의지 ○ 참여인력 확보 ○ 전문성 | ○ 수행책임자의 추진 의지 ○ 참여인력 확보(정규/비정규/용역) 여부 및 참여율 적정성 ○ 기업 및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 경험 및 제작역량 보유 여부 | 2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○ 재무건전성 | ○ 기업신용데이터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</th> <th>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</th> <th>③ 기업신용평가등급</th> <th>평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AA, AA+, AA°, AA-, A+, A°, A-, BBB+, BBB°, BBB-</td> <td>A1, A2+, A2°, A2-, A3+, A3°, A3-</td> <td>①의 AAA, AA+, AA°, AA-, A+, A°, A-의 BBB+, BBB°, BBB-에 준하는 등급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BB+, BB°</td> <td>B+</td> <td>①의 BB+, BB°에 준하는 등급</td> <td>4</td> </tr> <tr> <td>BB-</td> <td>B°</td> <td>①의 BB-에 준하는 등급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B+, B°, B-</td> <td>B-</td> <td>①의 B+, B°, B-에 준하는 등급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CCC+ 이하</td> <td>C 이하</td> <td>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</td> <td>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|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|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| 평점 | AAA, AA+, AA°, AA-, A+, A°, A-, BBB+, BBB°, BBB- | A1, A2+, A2°, A2-, A3+, A3°, A3- | ①의 AAA, AA+, AA°, AA-, A+, A°, A-의 BBB+, BBB°, BBB-에 준하는 등급 | 5 | BB+, BB° | B+ | ①의 BB+, BB°에 준하는 등급 | 4 | BB- | B° | ①의 BB-에 준하는 등급 | 3 | B+, B°, B- | B- | ①의 B+, B°, B-에 준하는 등급 | 2 | CCC+ 이하 | C 이하 |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| 1 |
|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|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|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| 평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AAA, AA+, AA°, AA-, A+, A°, A-, BBB+, BBB°, BBB- | A1, A2+, A2°, A2-, A3+, A3°, A3- | ①의 AAA, AA+, AA°, AA-, A+, A°, A-의 BBB+, BBB°, BBB-에 준하는 등급 | 5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BB+, BB° | B+ | ①의 BB+, BB°에 준하는 등급 | 4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BB- | B° | ①의 BB-에 준하는 등급 | 3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B+, B°, B- | B- | ①의 B+, B°, B-에 준하는 등급 | 2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CCC+ 이하 | C 이하 |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| 1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사업비 (20점) | ○ 사업비 편성 ○ 사업비 조달 계획 | ○ 사업비 편성의 사업목적 수행 적합성 ○ 자부담금 조달 규모의 적절성 및 조달 계획의 구체성 | 2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과제 기획 및 내용 (40점) | ○ 과제 이해도 ○ 과제 독창성 ○ 수행가능성 ○ 대중성(사업가능성) | ○ 사업의 목적과 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○ 과제의 차별성과 참신성 ○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기한내 완료가능성 ○ 일반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| 4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기대 성과 (10점) | ○ 후속발전가능성 ○ 경제성과 ○ 지역 기여도 | ○ 상용화 등 발전가능성 ○ 기대되는 매출 규모 및 투자유치 가능성 ○ 지역 대표 콘텐츠로서의 성장가능성 | 1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ESG (5점) | ○ 일자리 창출 | ○ 본 과제의 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 * 3명 이상 3점 / 2명 2점 / 1명 1점 / 0명 0점 | 3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○ 사회적기업 | ○ 사회적기업 인증(인증서 제출) * 제출 2점 / 미제출 0점 | 2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합계(100점) | | | 1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방법

- 공고기간: 2025. 3. 26.(수) ~ 4. 11.(금)
- 신청기간: 2025. 3. 27.(목) ~ 4. 11.(금) 16:00 까지
- 신청방법: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(www.gosims.go.kr) (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)
 - ※ 온라인(e나라도움) 사업신청 필수이며, 접수 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지원자격 적정성 검토 진행
 - ※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마감일 최소 1일 전에 e나라도움 가입 및 접수 권장
- e나라도움 접수(신청)방법 :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신청
 - e나라도움 또는 세종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sjtp.or.kr)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, 첨부서류 포함하여 온라인 접수

| 구분 | 세부내용 |
|----------------|---|
| 과제 조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e나라도움 홈페이지(www.gosims.go.kr)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■ [사업수행관리-신청관리-사업신청관리-공모현황]에서 공모기관에 ‘세종테크노파크’ 지정 후 [검색] 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■ 공모목록에서 “2025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” 선택 |
| 신청 서제 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“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” 선택 후, 오른쪽 위 [신청서작성] 버튼 클릭 ■ [사업기본정보], [수행기관정보], [재원조달계획], [자격요건확인], [파일첨부] 탭 순서로 작성 ■ 모든 탭의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서류 첨부 저장 완료 후 [신청서제출] 탭의 [신청서제출] 버튼을 눌러야 접수 완료됨 ※ 필수 및 선택제출서류를 미리 작성(준비), 마감시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신청서 제출 완료 ※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한 내에만 가능하고, e나라도움 접수 마감 후 서류 보완이 불가하오니 누락 되는 서류가 없는지 확인필요 ■ [사업수행관리-신청관리-사업신청관리-사업신청현황] 탭에서 접수 현황 확인 가능 ※ 마감 시간까지 시스템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, 추가 접수 절대 불가 ※ 제출서류 미비 시, 심사 제외 |
| 유의 사항 안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온라인(e나라도움) 신청 시 파일 용량이 50MB 이상일 경우 업로드 불가 (사전 용량 확인) 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■ 제출서류는 공고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■ 선정 과정에서 조작된 서류는 반드시 발견되며 위조 서류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오기입·오탈자 등으로 신뢰도가 낮은 문서를 제출한 경우 탈락할 수 있으며,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. |

○ 문의처

- 사업문의 : 세종테크노파크 과학문화산업팀 (044-850-3842)
- e나라도움 문의 :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(1670-9595)

□ 제출서류

○ 제출서류 : 과제신청서 포함 총 16개(1번~15번 필수제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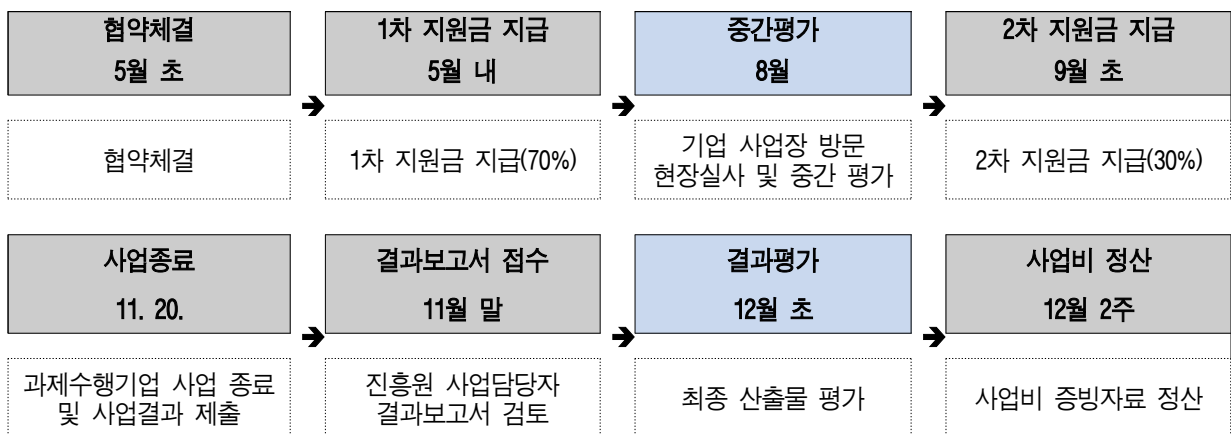
- ☞ “제출폴더양식 ZIP “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, 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e나라도움 업로드
- ※ 압축파일명 : 주관기관명_과제명 앞 2단어.zip
- ※ (통합버전) 1~15번 제출서류 파일을 하나로 통합 및 직인을 날인한 PDF파일 반드시 포함
- ※ (개별버전) 제출폴더양식.zip에 1~16번 각 제출서류별로 구분하여 저장
- ☞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: 50MB 이하
- ☞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음

| 구분 | 제출서류 | 제출형식 | 유의사항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필수 | 1 과제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| 한글PDF 파일 둘다 (hwp, pdf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표지 제외 과제신청서 2페이지 이내 작성 ○ 과제수행계획서 30페이지 이내 작성 |
| | 2 수행기관 소개서 (주관, 참여) | 한글파일 (hwp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(주관기관, 참여기관 양식 다름) ○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|
| | 3 정부지원 수혜실적(최근3년) | | |
| | 4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| 스캔파일 (pdf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/날인하여 기관별 PDF파일로 스캔, 제출 ○ 지정양식 작성, 직인 날인하여 PDF파일로 스캔, 제출 |
| | 5 공동수행 약약서 및 사업자부담금 약약서 | | |
| | 6 자원부담 배분 총괄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| 한글파일 (hwp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○ 해당시(일반용역비 편성시) 반드시 지정양식에 작성 |
| | 7 위탁사업 계획서 | | |
| | 8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| 엑셀파일 (지정양식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 기업별 지정양식에 대표자, 책임자 등 사업수행에 실제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작성 *개별인력 이력사항은 전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작성 |
| | 9 참여인력 이력 및 과제참여 현황 | 한글파일 (hwp) | |
| | 10 신규인력 채용계획 | | |
| | 9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| 스캔파일 (pdf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기업별 PDF파일로 스캔, 제출 ○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 ○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기업별 PDF파일로 제출 ○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기업별 PDF파일로 제출 ○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기업별 PDF파일로 제출 ○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기업별 PDF파일로 제출 ※ 공고일 기준 증명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○ 최근 3년간(22년~24년) 표준재무제표에 대해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기업별 PDF파일로 제출 ※ 설립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미제출 ※ 2023년 재무제표는 기업상황에 따라 가결산재무제표 제출 가능하나 회계기관(사) 인증 필수 ○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기업별 PDF 파일로 제출 ※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 |
| | 10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| | |
| |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(기업소재지 확인용) | | |
| | 12 4대보험 납입증명서 | | |
| | 1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| | |
| 14 표준재무제표 | | | |
| 1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| | | |
| 16 기타 증빙 서류 | 자유양식 | | |

5 사업수행 일정 및 관리

□ 사업수행 일정

- 주요일정 : 선정평가, 현장실사, 중간평가, 결과평가 (필요시 추진현황 점검)
 -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적정 집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 조사 시행
 -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진흥원 추진사업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
 - 그 외 사업비의 집행이나 결과물 제출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“2025년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”에 의거 수행



※ 상기 일정은 추진경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□ 사업수행 관리

| 구분 | 세부내용 |
|------|--|
| 중간평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가목적 : 지원사업 선정과제 추진점검을 위한 평가 진행 (2차 지원금 지급 여부) - 일시/장소 : 8월 중순 / 세종테크노파크 - 평가위원 : 산업계, 학계,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- 향후계획 :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2차 지원금 지급 |
| 결과평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가목적 : 지원사업 선정과제 과제수행도 및 개발 성과 점검을 위한 평가 진행 - 일시/장소 : 11월 말/세종테크노파크 - 평가위원 : 산업계, 학계,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- 향후계획 : 선정기업 대상 정산보고 요청 |

※ 필요 시 추진현황 점검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6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」, 「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(한국콘텐츠진흥원)」, 「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(한국콘텐츠진흥원)」 등 관련법령 및 관령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,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
-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
- 제출의 방법과 서류상의 누락 혹은 오기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, 이에 대한 불이익은 제출기업에 있음
-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기관(정부 및 공공기관)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, 지원금 회수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컨소시엄 내 한 개 기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무효 및 선정취소(신청자격 미달 등)
-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
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,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본 사업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수행기관의 서류 허위제출 등의 사항에 따른 제재사유 발생 시 선정취소, 협약해지, 사업즉시 중단, 지원금 환수, 사업 참여제한, 유관기관에게 제재사항 안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이후 전담기관 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(지급보증보험증권 등)
-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, 협약 시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(주관기업 및 참여기업)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됨
-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,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
-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와 최종선정결과는 (재)세종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함
-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(계좌)을 개설하여 구분·관리하여야 함

-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함.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를 완료해야 함
-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, 주관기업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토를 받아야 함
- 과제 결과물에 대해 우리 재단 및 전담기관(한국콘텐츠진흥원, 세종특별자치시)에서 홍보·마케팅 목적 및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및 이용할 수 있음
-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수행 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 조치 내용(수행기업명, 사유, 제재내용 등)을 우리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
- 지원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,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
-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, 지원금의 부당(유용, 횡령 등) 사용,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할 경우,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
- 예산 편성 또는 예산 집행 시 과제수행과 관련한 모든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
- 본 사업의 신청/사업 수행에 있어 관계법령, 안내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
- 사업 선정 발표 시 선정기업의 협약포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순위(예비선정)를 발표, 차 순위 기업이 선정될 수 있음
-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정책을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희롱·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 등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·시행하고 있음
 -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해당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(교부취소, 계약 해약 등)
 -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·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,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
 - ※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-5678(1번), 홈페이지 <https://bora.kocca.kr>
 -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

※ ('24.1.15.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)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유관자(프리랜서 등 포함)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

※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: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 의무교육,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,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

- 본 사업의 수행기업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지원 자격을 판단함
- 의무이행활동 미준수, 과업 중도포기 및 평가의견 ‘불량’ 의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,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
- 사업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 및 반납 미이행 시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 조치 취할 수 있음
-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, 지원금의 부당(유용, 횡령 등) 사용,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,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
-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[참고]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‘문화산업’ 분야

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문화산업”이란 문화상품의 기획·개발·제작·생산·유통·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.
 - 가. 영화·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
 - 나. 음악·게임과 관련된 산업
 - 다. 출판·인쇄·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
 - 라.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
 - 마.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
 - 바. 만화·캐릭터·애니메이션·에듀테인먼트·모바일문화콘텐츠·디자인(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)·광고·공연·미술품·공예품과 관련된 산업
 - 사. 디지털문화콘텐츠,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·가공·개발·제작·생산·저장·검색·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
 - 아. 대중문화예술산업
 - 자.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, 조형물, 장식용품,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
 - 차.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. 다만, 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조제2호의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.
 - 카.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